

Jones v. City of Los Angeles

사건 번호. BC577267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부 일부 고객은

합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집단 소송 합의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집단 통지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통지는 변호사의 권유가 아닙니다.

Si quisiera obtener un formulario de reclamo, notificación o copias de su(s) carta(s) en español, visite el sitio web del arreglo en www.ladwpbillingsettlement.com, o comuníquese con el Administrador de reclamos en el 1-844-899-6219.

만약 클레임 양식, 공지서 또는 본 편지 사본을 한국어로 받기 원하신다면, 합의관련 웹사이트인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을 방문하시거나 클레임 관리자에게 1-844-899-6219로 전화 주십시오.

如果您想獲取一份中文的索賠表格、通知書或您的信件的副本，請訪問結算網站 www.ladwpbillingsettlement.com，或者打電話聯繫“索賠管理員”，電話號碼 1-844-899-6219。

Nếu quý vị muốn có một mẫu đơn đòi, thông báo hay bản sao (các) thư từ của quý vị bằng tiếng Việt, xin đến trang mạng dàn xếp tại www.ladwpbillingsettlement.com, hoặc liên lạc với Quản Trị Viên Đơn Đòi tại số 1-844-899-6219.

Kung nais mong makakuha ng isang claim form, paunawa o mga kopya ng iyong (mga) liham sa Tagalog, bisitahin po lamang ang settlement website sa www.ladwpbillingsettlement.com, o kausapin ang Claims Administrator sa 1-844-899-6219.

- 합의는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부(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LADWP")의 하자 있는 신규 과금 시스템 실행과 관련해 발생한 LADWP의 과잉 청구 및 기타 청구 오류, 그리고 LADWP의 태양광발전 지원 시스템 참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고객들의 불만과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 만약 귀하께서 2013년 9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전력, 수도, 하수도, 위생 서비스 요금을 과잉 징수당하거나 기타 손해를 입은 고객인 경우, 그리고 2010년 2월 13일 이후 전력, 수도, 하수도 또는 위생 서비스 및/또는 LADWP의 태양광 발전 지원 시스템 참가로 인해 입금 받거나 환급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는 합의 이익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통지를 신중하게 읽으십시오.

중요 날짜 및 마감 요약

사건	날짜
예비 승인	2016년 12월 30일
집단 통지 날짜	2017년 4월 3일
청구 양식 제출 마감일 (현장 작업 고객을 제외한 모든 집단 구성원의 경우)	2017년 6월 5일
청구 양식 제출 마감일 (현장 작업 고객의 경우)	현장 조사 결정 서한의 날짜로부터 60일
탈퇴 마감일	2017년 6월 5일
이의 신청 마감일	2017년 6월 5일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 검토 신청 마감일(집단 구성원의사전 확인된 청구 해태의 경우)	2017년 5월 4일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 검토 신청 마감일(집단 구성원, 옴니버스 집단 구성원의 사전에 확인된 청구)	청구 결정 서한의 날짜로부터 30일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 검토 신청 마감일 (현장 작업 고객의 경우)	청구 결정 서한의 날짜로부터 30일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마감일 (특별 전문가의 검토를 신청한 합의 집단 구성의 경우)	특별 전문가의 결정 서한 날짜로부터 30일
출석 통지서 제출 마감일	2017년 6월 5일
최종 승인	2017년 6월 7일 오전 9시

본 합의에 있어서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선택권(OPTIONS)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합의 이익의 취득 - 합의 이익 수령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입금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귀하는 합의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 양식은 본 집단 통지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에서도 제공됩니다. 본 청구 양식 제출 마감일은 2017년 6월 5일입니다.

탈퇴 - 합의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 클레임 관리관에서 서한을 보내십시오. 귀하가 합의 집단의 구성원이며 합의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합의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습니다. 탈퇴 마감일은 2017년 6월 5일입니다.

이의 제기 -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 관리관에게 서한을 보내십시오. 아래 질문 16~19에 대한 대답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귀하는 적절한 통지 이후 합의의 공정성에 관한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합의 집단의 구성원이며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합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의 신청 마감일은 2017년 6월 5일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선택권(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마감일)은 본 집단 통지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을 감독하는 법원은 합의에 대해 예비 승인을 하였으나, 여전히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승인 청문회는 2017년 6월 7일 오전 9시에 개최됩니다. 합의 이익은 합의에 대해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고 모든 항소가 해결된 이후에만 분배될 것입니다.

본 집단 통지의 내용

	페이지
기초 정보	3
1. 본 집단 통지의 발행 이유는?	3
2. 본 소송의 내용은?	3
3. 본 집단 소송의 원인은?	3
4. 합의를 하는 이유는?	3
합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5. 내가 합의의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3
6. 합의에서 배제되는 예외는?	3
7. 내가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3
합의 이익:	
귀하가 얻게 되는 것과 그 방법	3
8. 합의의 규정 내용은?	3
9. 청구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은?	5
10. 내가 면제하는 청구는?	5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사들	5
11. 본 사건에서 나의 변호사가 있는가?	5
12. 변호사 보수의 지급 방법은?	5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에 의한 독립 검토 신청	6
13. 내가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된 입금액 또는 환급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6
합의 탈퇴	6
14. 합의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6
15. 2017년 6월 5일 이전에 탈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7
합의에 대한 이의 신청	7
16. 법원에게 합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법은?	7
17. 법원이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와 장소는?	7
18.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는가?	7
19.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가?	7
20.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8

기초 정보

1. 본 집단 통지의 발행 이유는?

법원이 사전 승인한 집단 소송의 합의안에 관해 알 권리가 귀하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본 집단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귀하는 또한 일부 합의 이익의 청구 방법 및 합의에 따른 귀하의 모든 선택권(option)에 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이 최종 승인하고, 모든 항소가 해결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유상의 이익이 분배됩니다.

2. 본 소송의 내용은?

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원고"이며, LADWP를 통해 행위하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피고"입니다. 사건명 Jones v. City of Los Angeles, 사건번호 BC577267로,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부(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LADWP")의 고객들이 LADWP의 하자 있는 신규 과금 시스템의 실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청구 또는 기타 청구 오류를 겪었거나, LADWP의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이하,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는 특히 사기, 과실에 의한 부실 표시, 계약 위반, 부당이득,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구제법(California Consumer Legal Remedies Act) 및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법(California 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www.ladwpbillingsettlement.com, 또는 전화 1-844-899-6219를 이용하시거나, 집단 소송 변호사(Jack Landskroner, Esq., Landskroner Grieco Merriman, LLC, 1360 West 9th Street, Suite 200, Cleveland, Ohio 44113.)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계약서 사본은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법원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3. 본 집단 소송의 이유는?

집단 소송에 있어서는 "집단 대표"라 불리는 1인 이상의 사람이 자기 자신 및 유사한 청구를 하는 타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집단(class)"이라 부릅니다. 법원은 본 합의를 위해 원고 중 일부를 집단 대표로 선임하였습니다. "합의 집단 구성원(Settlement Class Members)"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전력, 수도, 하수도, 위생 서비스 요금을 과잉 징수당한 고객, 그리고 2010년 2월 13일 이후 전력, 수도, 하수도 또는 위생 서비스 및/또는 LADWP의 태양광 발전 지원 시스템 참가로 인해 입금 받거나 환급 받을 자격이 있는 LADWP 고객 전원입니다.

4. 합의를 하는 이유는?

법원은 원고나 피고의 승소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쌍방이 합의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법원이 합의 집단(Settlement Class)을 대표하도록 선임한 집단 대표 및 변호사들은 합의가 모든 합의 집단 구성원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합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5. 내가 합의의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만약 귀하께서 2013년 9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전력, 수도, 하수도, 위생 서비스 요금을 과잉 징수당했거나 과금 실무로 인해 달리 손해를 입은 고객 및/또는 2010년 2월 13일 이후 LADWP의 태양광 발전 지원 시스템 참가로 인해 손해를 입은 LADWP 고객이라면 합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6. 합의에서 배제되는 예외는?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은 사건이 할당된 판사, 판사의 직계 가족, 본 소송에 있어서 법원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7. 내가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귀하께서 합의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을 방문하거나 1-844-899-6219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이익:

귀하가 얻게 되는 것과 그 방법

8. 합의의 규정 내용은?

합의는 두 종류의 구제를 규정합니다. (i) 금전적 구제 및 (ii) 비금전적 구제.

i. 금전적 구제

다음 7개의 하위 집단 중 하나 이상에 속하는 합의 집단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각 집단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잉 징수:** 이 집단에는 잘못된 요금, 잘못된 사용량, 잘못된 공공 요금 세율에 따라 과잉 부과되거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LADWP의 모든 고객이 포함됩니다.

- **부정확한 요금:** 이 집단에는 결제 지연 수수료, 재연결 수수료 및/또는 서비스 개시 수수료를 포함하여(이에 국한하지 않음) 잘못된 요금을 징수당한 LADWP의 모든 고객이 포함됩니다.
- **미환급 잔액:** 이 집단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LADWP의 모든 고객이 포함됩니다. (i) 예금잔고가 있는 "폐쇄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 (II) 2013년 9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LADWP가 유보한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태양광발전:** 이 집단에는 2010년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한 고객 중 다음에 해당하는 LADWP의 모든 고객이 포함됩니다. (i) 완전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한 이후 또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완전한 허가를 받고 예약 확인을 받음에 있어서 검사 준비를 마쳤다는 표시를 한 이후 30일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및/또는 (II) 소비 또는 발전된 에너지에 대해 청구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및/또는 (III) 고객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생산한 초과 에너지에 대해 입금 받지 않은 경우.

만약 귀하가 과잉 징수, 부정확한 요금, 미환급 잔액 및/또는 태양광발전 집단에 속하고, LADWP가 이미 귀하를 확인하였으며, 본 집단 통지에 포함되어 있는 편지에 귀하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통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를 수령하기 위해 귀하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다투려면, 귀하는 클레임 관리관에게 서면 검토 요청을 송부함으로써 특별 전문가의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특별 전문가의 결정을 다투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에게 확인된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손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귀하는 본 집단 통지에 포함된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9를 참조하십시오.

- **전제 조건/적산서:** 이 집단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LADWP의 모든 고객이 포함됩니다. (I)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수도 및/또는 전력의 초과 소비를 야기하는 전제 조건이 발생하고, (II) 2013년 9월 3일 이후 복수의 청구 기간 동안 적산서를 수령하였으며, (III) 이러한 적산서로 인해 적시에 전제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IV)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과금되었을 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수도, 전력, 하수에 대해 과금된 경우.
- **A. 자동 청구 결제/은행 당좌 대월:** 이 집단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LADWP의 모든 고객이 포함됩니다. (I) 은행의 자동 청구 결제 플랜에 가입하고, (II) LADWP가 고객에게 부정확한 양에 대한 과금을 함으로써 그 결과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과잉 인출됨으로써 당좌대월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만약 귀하가 전제조건/적산서 및/또는 자동 청구 결제/은행 당좌 대월 집단에 속하는 경우, LADWP는 이미 귀하를 확인하였으며 본 집단 통지에 포함된 서한에서 귀하가 이러한 하위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본 집단 통지에 포함된 청구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LADWP는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청구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 청구 결제/은행 당좌대월 수수료에 따라 귀하에게 초과 징수를 넘어서 추가적인 손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귀하는 이러한 손해를 청구 양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질문 9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청구 양식에 따라 LADWP는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금액을 다투려면, 귀하께서 특별 전문가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특별 전문가의 결정을 다투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을 참조하십시오.

- **옵니버스:** 이 집단은 상기 하위 집단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음에 해당한다고 믿는 LADWP의 모든 고객이 포함됩니다. (i) 2013년 9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자신의 전력, 물, 하수, 위생 서비스와 관련해 평가된 부과액이 부정확하지만 본 문서에 열거된 어떤 하위 집단을 통해서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믿는 경우, 또는 (ii) 2010년 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자신의 LADWP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 참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믿는 경우.

만약 귀하가 이 집단에 속한다면, 이는 LADWP가 상기 하위 집단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집단 통지에 포함된 서한은 귀하가 여전히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본 집단 통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 양식에 따라 LADWP는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금액을 다투려면, 귀하께서 특별 전문가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특별 전문가의 결정을 다투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현장 작업 고객이라면, 귀하에게 과잉 징수 또는 과금 오류나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부동산의 상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현장 조사 작업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장 조사 작업이 완료되면, LADWP는 해당 조사 작업과 관련한 결정 사항을 귀하께 서한을 통해 통지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현장 작업 고객이라면, 귀하는 LADWP의 결정을 귀하에게 알리는 서한을 수령한 후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청구 양식에 따라 LADWP는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금액을 다투려면, 귀하께서 특별 전문가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특별 전문가의 결정을 다투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을 참조하십시오.

ii. 비금전적 구제

합의는 또한 다음을 포함한 비금전적 구제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일정한과금 시스템 지표의 마련 및 채택, (ii) 과금 시스템 독립 감시 전문가의 선임, (iii) 과금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LADWP의과금 시스템 감사, (iv) 고유한 또는 복잡한과금 문제를 다루기 위한 LADWP 팀의 구성 및 운영, (v) 과금 오류로 인해 청구가 지연되는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의 단축을 규정하는 수도 및 전력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정 규칙의 채용, (vi) 정보 기술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vii) 사후 청구를 받은 고객을 위해 사후 청구 금액을 4년 동안 월별 균등 분할로 별칙이나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결제 약속. 단, 귀하에게는 가장 최근의 청구서가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이미 결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은 1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청구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은?

청구 양식은 집단 통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 양식은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에서 인터넷으로 입수하거나, 1-844-899-6219로 연락하거나, 아래 주소의 클레임 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청구 양식은 인터넷으로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에 제출하거나 일반 미국 우편을 이용해 다음 주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LADWP 요금 합의
클레임 관리관
P.O. Box 43449

Providence, Rhode Island 02940-3449

10. 내가 면제하는 청구는?

만약 귀하가 합의가 마무리될 때 합의 집단 구성원이며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피고 및 그 부서(department)와 국(bureaus)을 본 사례와 관계된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되며, 합의 계약에 포함된 책임 면제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면제를 규정하는 합의 계약서는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사들

11. 본 사건에서 나의 변호사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Landskroner Grieco Merriman, LLC(1360 West 9th Street, Suite 200, Cleveland, Ohio 44113)의 Jack Landskroner(집단 변호사) 및 Law Offices of Michael J. Libman(18321 Ventura Blvd., Ste. 700, Tarzana, CA 91436)의 Michael J. Libman(연락 변호사, Liaison Counsel)가 법원에 의해 귀하 및 기타 합의 집단 구성원을 대표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를 통한 별도 대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2. 변호사 보수의 지급 방법은?

집단 소송 변호사는 최종 승인 공청회에서 법원에 대해 \$19,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변호사 비용의 지급 및 본 사건의 소송을 통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3,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상환을 요청하게 됩니다(독립 CC&B 시스템 감시 전문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상환은 \$2,500,000가 상한이며, 모든 원고의 변호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상환은 \$500,000가 상한입니다). 수수료 및 상환 비용은 집단을 위해 본 합의의 확보 및 그 실행의 도움에 참가한 변호사가 수행한 작업을 토대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본 사안의 모든 수수료는 변호사의 활동을 기초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청구하게 됩니다. 본 소송에 관계된 다수의 변호사 사이에 "구전(fee splitting)"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Knapp, Petersen & Clark 법률 사무소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돕고 청구 과정에 있어서 태양광발전 고객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집단 소송 변호사 Landskroner Grieco Merriman과 협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Knapp, Petersen & Clark 법률 사무소는 자신들이 행한 업무를 토대로 계속하여 태양광발전 고객을 위해 활동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법원에 대한 Knapp의 수수료 신청은 최종 승인 시 집단 소송 변호사가 신청하거나 동 변호사에게 수여되는 수수료 중 \$1,999,999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이 변호사 비용과 비용 상환을 결정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이 결정하는 일체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집단 소송 변호사가 구제 기간 동안 합의의 관리를 감시·감독함으로써 클레임 관리관을 도울 책임을 지기로 합의합니다. 나아가 피고는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최종 승인 이후 집단 소송 변호사는 다음 청구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모든 장래 회수 금액의 29%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i) 현장 작업 클레임, (ii) 사전 확인된 클레임, (iii) 옴니버스 클레임, (iv) 일체의 부서를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그 대리인의 합의와 관련해 지급되는 모든 클레임. 집단 소송 변호사는 법원에 해당 변호사 비용의 추가 판단신청을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분기별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기 질문 8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합의 대가 이외에, 피고는 합의 집단에 대해 통지하고 합의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합의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에 의한 독립 검토 신청

13. 내가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된 입금액 또는 환급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입금 또는 환급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한을 1급 우편을 통해 송부함으로써 특별 전문가가 수행하는 독립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a)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입금 또는 환급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 및 귀하가 특별 전문가의 검토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b) 귀하가 입금 또는 환급 금액을 다투는 사유를 설명할 것,

(c) 입금 또는 환급 금액을 다투는데 있어서 귀하가 근거로 삼는 일체의 서류를 첨부할 것.

귀하는 독립 검토 요청을 위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은 다음 주소로 송부해야 합니다.

LADWP 요금 합의
클레임 관리관
P.O. Box 43449

Providence, Rhode Island 02940-3449

만약 귀하가 청구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별 전문가 검토 요청서에는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입금 또는 환급 금액을 LADWP가 귀하에게 통지하는 서한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청구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특별 전문가 검토 요청서에는 귀하의 클레임에 관해 LADWP가 응답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 특별 전문가 검토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검토 요청은 자동적으로 거부됩니다.

해당 집단 구성원의 클레임에 대한 특별 전문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모든 집단 구성원은 특별 전문가의 결정 서한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1급 우편을 통해 법원의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클레임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결정을 다투는 사유를 기재하고 일체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은 다음 주소로 송부해야 합니다.

LADWP 요금 합의
클레임 관리관
P.O. Box 43449

Providence, Rhode Island 02940-3449

합의 탈퇴

14. 합의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귀하에게는 합의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탈퇴 시, 다음 주소로 클레임 관리관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우편을 송부해야 합니다.

LADWP 요금 합의
클레임 관리관
P.O. Box 43449

Providence, Rhode Island 02940-3449

귀하는 탈퇴 요청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은: (i) 합의 집단에서 탈퇴한다는 귀하의 희망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ii)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LADWP 계좌번호 및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배제 요청은 상기 주소로 우송해야 하며, 2017년 6월 5일 이전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배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자동적으로 합의 집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본 합의 집단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경우, 귀하는 일체의 합의 혜택에 대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본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본 합의에서 결정된 청구권에 대해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 LADWP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합의 집단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습니다.

15. 2017년 6월 5일 이전에 탈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합의안이 승인되고 귀하가 합의 집단에서 적절하게 적시에 탈퇴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과금 오류 또는 LADWP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참여와 관련된 손실과 관련해 피고에 대해 귀하가 가지는 모든 클레임을 **포기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되며, 귀하는 자신을 위해 장래에 이런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에 대한 이의 신청

16. 법원에게 합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법은?

귀하가 합의 집단 구성원이고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견해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귀하는 클레임 관리관에게 귀하가 합의 조건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송부해야 하며, 이 서한은 법원과 변호사에게 제공됩니다. 귀하의 이의 신청은: (i) 귀하의 이의에 대한 법적, 사실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ii)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LADWP 계좌 번호,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iii) 귀하가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별도 변호사를 통해 대표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2017년 6월 5일 이전에 자신의 출석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귀하는 자신의 이의를 다음 주소로 클레임 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2017년 6월 5일 이전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LADWP 요금 합의
클레임 관리관
P.O. Box 43449

Providence, Rhode Island 02940-3449

귀하의 이의 신청서가 담겨 있는 겹봉에 "*Jones v. City of Los Angeles, Case No. BC577267*" 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법원이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와 장소는?

법원은 존경하는 Elihu M. Berle 판사 주재로 County of Los Angeles, Central District, Central Civil West, 600 South Commonwealth Avenue, Los Angeles, California, 90005에 소재하는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 323부에서 2017년 7월 7일 오전 9시에 최종 승인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법원은 합의의 공정성, 합리성,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에 대해 검토합니다. 법원은 또한 집단 소송 변호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법원은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18.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집단 소송 변호사가 Berle 판사의 모든 질문에 답변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비용으로 참석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를 대리해 별도의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최종 승인 청문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토론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서면 이의서가 마감 이전에 접수되고 귀하가 상기 질문 16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지침을 따르는 한, 법원은 귀하가 이의 신청서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19.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가?

이는 Berle 판사에게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최종 승인 청문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하는 "*Jones v. City of Los Angeles, 사건 번호 BC577267*에 대한 출석 의향 통지서"임을 밝힌 서한을 송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LADWP 계좌 번호, 그리고 최종 승인 청문회에 귀하를 대리해 출석하는 변호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출석 의향 통지서는 상기 질문 17에 대한 대답에 나열된 주소로 법원 서기에게 2017년 6월 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지서가 담겨 있는 겹봉에 "Jones v. City of Los Angeles, Case No. BC577267" 이라는 문구를 법원 주소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귀하가 합의 집단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본 소송이나 합의안의 조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귀하는 예비 승인을 허락하는 법원의 명령 및 합의 계약안을 포함해 본 소송의 변론, 기록, 기타 법원 서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주중의 정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County of Los Angeles, Central District, Central Civil West, 600 South Commonwealth Avenue, Los Angeles, California, 90005에 소재하는 캘리포니아주 고등 법원 서기실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 명령 및 합의안은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에서도 제공됩니다. 본 통지에 포함된 일체의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합의 웹사이트 www.ladwpbillingsettlement.com를 방문하시거나, 1-844-899-6219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실 수 있으며, 집단 소송 변호사에게 다음 주소로 서한을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Jack Landskroner, Esq.
LANDSKRONER, GRIECO MERRIMAN LLC
1360 W 9th Street, Ste. 200
Cleveland, OH 44113

합의에 관한 질문을 위해 법원에 직접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